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58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구자근・김선교・강대식

김기현 · 김위상 · 인요한

최수진 • 박덕흠 • 정동만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하였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 또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제2조(유효기간)		
<u>2년</u> 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3 <u>년</u>		
가진다.			